

『백스코 제3전시장 건립사업』
기본설계 제한공모 설계지침서인

목 차

제1장 설계공모 개요

1. 설계공모 목적 및 범위	2
2. 설계공모 운영	3
3. 제출도서 및 작성요령	7
4. 심사 및 입상작 선정	10
5. 계약에 관한 사항	14
6. 기타 사항	16

제2장 설계공모 설계지침

1. 사업 일반개요	17
2. 기본 설계지침	21
3. 각종서식 및 제공자료	35

제1장 설계공모 개요

1. 설계공모 목적 및 범위

1.1. 설계공모 명칭 : 『백스코 제3전시장 건립사업』 기본설계 제한공모

1.2. 사업의 목적

- 백스코 제3전시장 건립을 통해 국내·외 타 전시컨벤션센터와의 경쟁적 시설 확충 대응 및 가동률 포화로 성장한계에 도달한 백스코 시설을 확충하고, 글로벌 MICE 산업의 변화하는 시대 트렌드에 부합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전시컨벤션센터를 조성하기 위함

1.3. 제한공모의 목적

- 부산의 대표 전시컨벤션센터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최적의 설계안을 얻기 위해 대형 전시컨벤션센터 설계 실적을 보유하고 본 사업 설계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설계자를 경쟁과 심사를 통해 선정하기 위함

1.4. 공모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사업명	백스코 제3전시장 건립사업	· 백스코 제1전시장 시설 확충
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500	
지역·지구 등	일반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방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철도	·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
대지면적	124,544.2㎡	· 제3전시장 대지면적 : 24,150 ㎡
연 면 적	70,500㎡	
층 수	제한 없음	
용 도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총 예정사업비	190,800백만원	
총 공사비	155,212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설 계 비	6,403백만원	· 기본설계(계획, 중간설계) 용역비 · 조사측량비, 토질조사비, 설계안전성검토, 손해배상보험, 부가가치세 등 포함
기 타	29,185백만원	· 실시설계, 교통영향평가 등 · 감리비, 예비비 등

※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비 등)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총 공사비 범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2. 설계공모 운영

2.1. 설계공모 방식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72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조 제9호에 따른 제한공모

2.2. 설계공모 조직

가. 설계공모 주최 : 부산광역시 총괄건축과

[담당자: 김희정(전화번호: 051-888-4275, 전자우편: lalala9389@korea.kr)]

나. 운영위원회 :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질의응답 자문, 심사위원 추천, 기술검토서 작성 등 설계공모 전 과정을 운영한다.

다. 심사위원회 : 토론을 통해 공모안을 분석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당선작을 선정한다.

2.3. 부산광역시 건축설계공모 홈페이지

가. 주소: <https://making.busan.go.kr>

나. 이용: 설계공모 참가 및 공모안 제출 등 공모 전반에 필요한 모든 정보는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참가등록 및 공모안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한다.

2.4. 설계공모 일정

구 분	추진일정	비 고
참가등록	2023.03.22.(수) 09:00~03.23.(목) 17:00	· 등록방법 : 홈페이지 등록
질의접수	2023.03.29.(수) 09:00~03.30.(목) 17:00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수
질의답변	2023.04.07.(금) 18:00까지	· 회신방법 : 홈페이지 게재
작품제출	2023.06.01.(목) 09:00~06.02.(금) 17:00	· 제출방법 : 홈페이지 제출
기술검토	2023.06.05.(월)~06.09.(금)	· 심사 전 법규 및 지침 위반사항 등 검토
1차 심사	2023.06.15.(목) 14:00 ※ 2차 심사 대상자 통지 2023.06.15.(목) 22:00까지	· 장소 : 부산광역시청 · 설계설명서 심사(공개로 진행) · 6작품 이상 접수 시 심사위원회에서 2차 심사대상 5개 이내 작품 선정 · 2차 심사 대상자는 개별 유선 통지

구 분	추진일정	비 고
2차 심사 (1차 심사시 선정작품)	2023.06.16.(금) 14:00	· 장소 : 부산광역시청 · 발표 및 심사(공개로 진행) ·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 선정
심사결과 발표	2023.06.19.(월)	· 홈페이지 게재,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에 한하여 개별 통지

※ 응모작품이 5개 이하일 경우 1차 심사는 생략한다.

※ 상기 및 본 설계공모 지침서의 모든 내용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응모자에게 필요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2.5 언어 및 계량단위

가. 공식 언어는 ‘한국어’ 로 하고 필요에 따라 일부 영어나 한자로 표기할 수 있다.

※ 한국어와 영어 등 다른 언어 사이에 해석상의 충돌이 있을 경우, 한국어를 우선으로 하며, 분쟁 발생 시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나. 모든 계량단위는 ‘미터법’ 을 사용한다.

다. 모든 날짜와 시간은 한국시간을 기준으로 한다(GMT+9)

2.6 참가등록

가. 참가자격

1)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자” 라 한다)에 한해 참여 가능하다.

2)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소지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본 공모에 참여 가능하며, 당선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따라 해당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계약당사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로 한다.

3) 실적 제한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가 아래 모두 해당하는 설계용역(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용역 중 어느 하나를 말하며, 신축 또는 증축 행위에 한한다) 완료 실적이 있는 자에 한해 참여 가능하다.

가)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의 시설

나) 규모: 건축 연면적(증축의 경우 증축 부분을 말함) 10,000㎡ 이상

4) 공동응모 시 총 2인까지 참여 가능하며, 구성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등록하여야 하고, 공동응모자 중 1인 이상은 상기 3)의 실적을 보유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5) 공동응모자로 참가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다.

6) 심사위원·운영위원 당사자 및 당사자가 속한 조직, 조직의 직원 등 기타 본 공모와 관련 있는 관계자는 응모 및 계약할 수 없다.

7) 유의사항

가) 당선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사업 지연에 따른 배상 등 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나) 공동응모의 경우 참가등록 신청 이후 공동응모자를 변경할 수 없으며(공동응모협정서 제출) 당선된 후 계약은 공동계약방식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 설계공모 참가자격 판단 기준일은 참가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참가등록 기간 : 2023.03.22.(수) 09:00~2023.03.23.(목) 17:00

다. 참가등록 방법

1) 홈페이지(<https://making.busan.go.kr>)를 통해서만 등록 가능함(우편, 팩스접수 불가)
2)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로그인) → 진행 중 공모 → 해당 공모전 선택 → 참가등록 신청] 후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을 작성해야 등록이 완료된다.

3) 등록기간 내 정보 변경은 가능하며, 등록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일체 수정하지 못한다.

4) 등록기간 내 홈페이지의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참가등록이 불가할 경우, 부산광역시 총괄건축과에 유선(전화)으로 해당사항을 확인받아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참가등록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담당자: 김희정(전화번호: 051-888-4275, 전자우편: lalala9389@korea.kr)]

라. 참가등록 서류

1) 대표자 및 공동응모자 건축사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

2)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3) 실적 증빙서류[실적관리수탁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기관(처)에서 발급한 서류]
- '2.6. 참가등록, 가. 응모자격, 3)'에 해당하는 실적에 한하여 제출

4) 서약서(서식 제2호)

5)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서식 제1호)

- 공모안 작성에 직접 관여하는 참여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대표, 직원, 외주업체 포함)

6)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서식 제2-1호)

7) 공동응모협정서(공동응모일 경우에 한함)(서식 제3호)

8) 대표건축사 선임계(공동응모일 경우, 동일회사 복수인원 참가시에 한함)(서식 제4호)

9)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서(서식 제5호)

- 공모안 작성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으나 외부 자문 등으로 참여하는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

10) 보안각서(서식 제6호)

- 설계공모 참여자[서식 1], 참여 외부전문가[서식 5]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

11) 청렴서약서(서식 제7호)

마. 참가등록 자격제한 : 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 건축사법 제30조3(징계)에 따른 자격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휴업, 폐업 등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설계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바. 유의사항

- 1) 공동응모의 경우 공동응모 참여업체 분까지 포함하여 상기 구비서류를 각각 첨부하고 참여자 명단 및 공동응모협정서를 첨부한다.
- 2) 설계공모에 응모하는 회사는 단독 또는 공동응모 중 1개 방식으로만 참여하여 1개 작품만 제출 가능하다.

2.7. 질의접수 및 답변

가. 질의기간 : 2023.03.29.(수) 09:00~2023.03.30.(목) 17:00(기간 내 신청에 한함)

나. 답변기간 : 2023.04.07.(금) 18:00까지(홈페이지 게재)

※ 질의에 대한 응답(회신)은 본 설계공모 지침서의 수정으로 간주한다.

다. 질의방법

- 참가등록을 완료한 자는 질의기간에 홈페이지(<https://making.busan.go.kr>)를 통해[로그인 → 진행 중 공모 → 해당 공모전 선택 → 질의응답] 질의 가능함(우편, 팩스, 전화, 전자우편 질의 불가)

2.8 작품제출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2023.06.01.(목) 09:00~2023.06.02.(금) 17:00(기간 내 홈페이지로 제출)

나. 작품 제출방법

- 1)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작품을 제출할 수 없으며, 작품과 모든 서류는 홈페이지(<https://making.busan.go.kr>)를 통해 제출 가능함(우편, 팩스 접수 불가)
- 2) 홈페이지에 접속하여[로그인 → 진행 중 공모 → 해당 공모전 선택 → 작품제출]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 3) 제출한 작품은 일체의 수정, 변경 또는 보완 등을 할 수 없다.
- 4) 모든 파일은 제출기한 내에 업로드 완료하여야 하며, 참가자는 업로드에 소요되는 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업로드 미완료 시 제출기간 미준수로 판단되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5) 제출기간 내 홈페이지의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작품제출이 불가할 경우, 부산광역시 총괄건축과에 유선(전화)으로 해당사항을 확인받아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작품과 모든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담당자: 김희정(전화번호: 051-888-4275, 전자우편: lalala9389@korea.kr)]

- 6) 심사는 SNS(Facebook-부산광역시 설계공모)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생중계될 수 있으며, 공모안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제출도서 및 작성요령

3.1 제출도서 목록

구 분	규 격	파일형식	파일명	비 고
설계설명서	A3 300MB 이하	pdf	설계설명서.pdf	40쪽 이내 (별첨 1 참조)
3D 모델링	300MB 이하	skp, skb	3d모델링.skp	-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A4 Size	pdf	-	[서식 2-2]
설계공모 심사위원 기피신청서	A4 Size	pdf	-	[서식 8]
홈페이지 게재 이미지	300dpi 이상 각 5MB 이하	jpg	대표이미지.jpg 조감도.jpg 투시도.jpg 개념도.jpg 배치도.jpg ○층평면도.jpg 입면도.jpg 단면도.jpg	설계설명서 내 이미지 (대표이미지는 다른 이미지와 중복 가능)

※ 2차 심사(공개)는 제출된 설계설명서 및 3D모델링으로 발표 가능

※ 홈페이지 게재 이미지는 입찰할 경우 홈페이지에 전시되는 도서로서 설계설명서 내의 이미지로 한정하여 업로드하여야 하며, 같은 종류의 이미지인 경우 숫자로 구분하여 업로드 (ex. 조감도1.jpg/조감도2.jpg/..., ..., 단면도1.jpg/단면도2.jpg/...)

3.2 작성요령

가. 제출도서의 익명성

- 1) 작품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에서 명기한 내용 외에 모든 제출물에 참가자임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없다.
- 2) 익명의 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시까지 설계공모 전체기간 동안 적용한다.

나. 설계설명서

- 1) A3 용지에 가로로 작성하며, 색상은 제한하지 않는다(배경무늬 사용 불가).
- 2) 전체 매수는 40쪽 이내(표지, 목차, 간지는 매수에서 제외하며 기타 표현을

사용할 수 없음)로 작성한다.

3) 도면의 종류

- 조감도 또는 (실내)투시도 5컷 이상, 배치도(제1·2전시장 전체, 증축 건물 상세), 평면도(층별, 상세), 입면도 4면 이상, 단면도 2면 이상, 동선계획도, 기초 및 구조 계획 1쪽 이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고효율 구조물 설계/환경친화형 건축설계에 관한 사항, 신기술/신공법 적용 등에 관한 사항

4) 축척은 설명서 크기에 맞추어 보기 쉽게 작성한다.

5) 설계설명서의 글자체, 글자 크기는 가독성과 주어진 분량 및 2차 심사 시 발표 자료로 활용됨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작성한다.

6) 설계설명서는 ‘별첨 1 설계설명서 서식’에 따른다.

7) 조감도 또는 투시도는 각 도면당 설계설명서 한 페이지 전면을 사용하고, 표현기법은 「렌더링 제한기준」의 범위 내에서 3차원 이미지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8) 설계설명서 도면에는 해당 도면을 설명할 수 있는 부가적인 표현이 가능하나, 「렌더링 제한기준」에 위배되는 이미지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용할 수 없다.

※ 「렌더링 제한기준」

1. 일조에 의한 그림자 표현을 위한 직접조명을 제외한 모든 “조명 알고리즘을 이용한 렌더링 기법”은 사용할 수 없다.
2. 투시도 및 조감도의 시야각은 60° 이상의 광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때 투시도 작성 시 평면도(또는 key plan) 상에 시점과 시야 및 그 각도를 표현하여야 한다.
3. 투시도 및 조감도는 정확한 3차원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기준 1 범위 내에서 그림자, 색상, 투명도, 재료 등을 표현할 수 있되 라인드로잉 기반의 투시도를 권장한다.
4. 부가적인 표현은 도면 및 문자로는 설명이 부족한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도표, 스케치, 다이어그램,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라인드로잉 기반 투시도를 의미하며 도면 등에 부속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5. 기타 건축물의 표현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기법은 사용할 수 없다.



<참고사례 1>
자료제공: 이한건축사사무소



<참고사례 2>
자료제공: (주)파크이즈건축사사무소

다. 3D 모델링

- 1) 스케치업(SketchUp)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 2) 2차 심사 시 발표 자료로 활용됨을 고려하여 제작한다.

라. 주의사항

- 1) 모든 제출물의 원본은 공모 참가자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제출과정 및 제출 후 발생한 손상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어떠한 사유로 제출물이 손상되어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공모 참가자는 제출물을 다시 제출할 의무를 갖는다.
- 2) 참가자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참조 이미지나 사례를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3) 제출기간 내에 정상적인 파일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출시간 미준수’로 판단해 작품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4)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서식과 제출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 5) 제출도서의 익명성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격처리할 수 있다.
- 6) 설계설명서의 규격·쪽수, 파일작성 지침 등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 7) 제출된 공모안은 심사결과 발표 후 발주기관이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4. 심사 및 입상작 선정

4.1 기술검토

가. 운영위원회는 설계공모 규정 및 지침, 관계 법령에 기초하여 참가작품의 위반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심사위원회에 보고한다.

나. 기술검토 사항

구분	항 목	위반 여부		운영 규정
		여	부	
법령 위반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 등편의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의 주요 사항 위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된 모든 작품을 대상으로 검토 · 검토 결과에 대한 기술검토서 작성 및 심사위원회 상정 · 심사위원회에서 기술검토 결과 반영 여부 결정
지침 위반	익명성 위반 여부			
	예정공사비 초과			
	규격 및 작성방법 미준수			
	설계도서 기준매수 초과			
	제출도서 누락			
	그 외 지침서의 요구사항 위반 여부 등			

※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참여업체에 전자우편이나 유선 또는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4.2 심사위원회

가. 심사위원

분 야	성 명(소속, 직위)
심사위원(5)	조형장(건축사사무소 메종, 위원장) 김용남(㈜삼현도시 종합건축사사무소, 위원) 로렌스김(부산대학교, 위원) 하호진(경성대학교, 위원) 김민석(부경대학교, 위원)
예비심사위원(2)	여운배(이도건축사사무소, 예비위원) 김명건(㈜다움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예비위원)

나. 심사위원장

- 설계공모 심사를 주관하며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공모안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다. 심사위원회 운영 방법

- 1) 심사위원회는 심사 개시 전 기술검토서를 바탕으로 응모작품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심사에 이를 반영한다.
- 2) 심사위원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을 결정하고, 그 선정 사유와 심사평, 그리고 발주기관을 위한 조연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최종 심사평가서를 작성한다.

4.3 심사기준

가. 심사방법: 심사위원은 공모대상지를 사전에 답사하고, 해당사업의 목적 및 특성, 설계지침서, 설계공모안을 사전에 제공받아 검토한 후 심사에 임한다.

1) 1차: 공개 토론 심사(일반인 시청 가능)

가) 심사위원은 기술검토 결과를 확인하여 실격 여부를 결정하고, 자유토론을 통해 5개 이하의 작품을 선정한다.

나) 응모작품이 5개 이하일 경우 1차 심사는 생략한다.

2) 2차: 공개 프레젠테이션 심사(비대면 온라인 화상발표 심사, 일반인 시청 가능)

가) 심사위원은 발표자와 프레젠테이션에 관해 질의응답으로 관련 사항을 확인한다.

나) 심사위원은 작품별로 각자의 평가를 피력하고, 발표자는 그에 대해 반론 또는 변론할 수 있다.

다) 심사위원은 자유토론을 통해 심사하여 심사위원 간 합의를 통해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을 결정한다. 다만 합의가 어려울 경우 투표로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을 결정한다.

3) 심사위원(심사위원장 포함)은 홈페이지를 통해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에 대한 심사평가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4) 심사과정에서 실격된 작품은 해당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문서로 작성해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5) 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 응모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2차 심사 대상작품,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작품설명(2차)

1) 작품설명은 제출된 설계설명서를 활용하여 공개 발표로 진행한다.

2) 발표 시간 15분, 질의응답 시간 10분을 원칙으로 하되,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심사위원회가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다.

3) 발표자는 대표자를 원칙으로 하되, 대리인이 발표할 수 있다. 대리인은 공모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계획에 참여한 설계자(서식1)에 한하며, 발표 당일 09:00까지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해당 사항을 확인받아야 한다.

4) 기타사항

- 가) 발표순서는 발표 당일에 심사위원장의 공개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 나) 발표자의 재직기간 및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온라인 화상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 참가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에서 제외한다.
- 다) 타 작품과의 비교설명, 시간 초과 등 발표자가 공정한 발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발표자 상호 간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행위 포함)를 하는 경우, 심사위원장은 발표를 중지시킬 수 있다.
- 라) 작품설명 등 심사과정은 SNS를 통하여 공개될 수 있으며, 발표자 및 심사 관계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실격 고려 항목

- 실격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격 여부를 결정한다.
 - 가) 참가자 및 심사위원이 공정한 평가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 나) 참가자 및 심사위원, 제3자가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 다) 심사 전에 심사위원과 접촉하여 설명한 경우
 - 라) 제출한 서류 등의 허위사실, 건축계획에서 심각한 과제 누락,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한 법규 위반 등 중대한 미비 사항이 발견될 경우
 - 마) 대상 부지의 경계 및 면적을 초과 또는 임의 조작하여 제출한 경우
 - 바) 심사위원 전원이 타 작품의 명백한 모방으로 판정한 경우
 - 사) 심사위원이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조제6항에 따른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

라. 처벌조항

- 당선자에게 실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계약체결 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체결된 계약을 무효(선금 및 기성금 회수)로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기타 입상작의 경우에는 입상 무효, 상금을 회수하며 경우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4.4 입상작의 종류와 시상내용

가. 입상작

- 입상작은 당선작 1점(기본설계권 부여), 기타 입상작으로 한다.

나. 입상작 시상내용

- 1) 당선작 : 상장 및 기본설계권 부여
- 2) 기타 입상작 : 심사위원회가 4인 이내로 선정, 상장 및 상금 지급

- 가) 4인인 경우 :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 나) 3인인 경우 :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를 지급
- 다) 2인인 경우 :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 라) 1인인 경우 : 보상비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 ※ 단, 기타 입상작의 수와 순위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동일한 순위의 기타 입상작이 결정된 경우에는 아래에 따른다.
 - 동일한 순위가 높은 순위인 경우: 높은 순위와 낮은 순위의 각 상금을 합하여 평균한 금액 지급
 - 동일한 순위가 낮은 순위인 경우: 해당 순위의 금액 지급
- 3) 보상비 예산 : 금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4)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
- 5) 기타 입상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이 보상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 요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6) 보상금에는 심사 및 시상식에 참석할 경우의 교통비, 일체의 저작권료와 세금 및 환전송금 등 각종 수수료를 포함하며, 세금은 대한민국의 세법을 적용한다.

4.5 입상작 발표 및 시상식

- 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 나. 입상작에 대한 시상식은 추후 발주기관이 지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시행한다.

4.6 입상작에 대한 조건

가. 당선 이후 조건

- 1) 당선자는 발주기관과 계약체결에 대한 우선 협상권을 가지며 발주기관은 계약 상대자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10일 이내에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정, 사업의 추진 여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 2) 당선자가 법령, 기타 등의 사유로 설계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 상대자가 결정된 이후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하지 않을 경우 심사결과에 의한 차순위 작품으로 설계권 등을 부여할 수 있으며, 차순위자에게 지급된 상금은 계약 금액에 포함하여 계약한다.
- 3) 당선자는 관련 예산·정책·사업계획의 변경·심사위원회가 보완을 요구한 사항을 비롯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한 사항으로서 설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4) 당선자는 “설계공모 지침서”, “과업지시서” 등 발주기관이 계약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5)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저작권 및 출판 전시

- 1) 참가작품은 창작품이어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팀)에게 있으며, 당선작의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 2) 참가작품의 모든 권리(저작권, 소유권 포함)는 참가자(팀)에게 있다. 필요한 경우 참가작에 관한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참가자(팀)와 별도로 약정하여 정한다.
- 3) 상업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모든 참가작품은 참가자(팀)와 별도의 보상 및 협의 없이 전시할 수 있으며, SNS 또는 웹사이트 등에 게재하거나 도서로 출판할 수 있다. 참가자(팀)는 이상의 전시, 게재 및 발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응모작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계약에 관한 사항

5.1 일반사항

- 가. 계약서는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한국어로 작성한다.
- 나. 당선자는 계약 시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다. 발주기관은 제출 작품에 대한 설계용역 과정에서 심사위원회 등의 동의를 받아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선자는 그 요구가 전체 작품개념을 현저히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라. 공모 운영은 설계공모 운영위원회에서, 설계공모 행정절차는 부산광역시 총괄 건축과에서 하며, 공모 완료 후 계약, 착수 및 용역준공 등은 부산광역시 건설 본부에서 진행한다.

5.2 계약의 당사자 조건

-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면허소지자로 같은 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단, 외국의 건축사 면허(자격)를 가진 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함
- 나.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소방·정보통신 등의 설계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다음 전문분야 설계 자격이 있는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용역을 시행하여야

하며, 기타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요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1) 전기분야 설계용역과업의 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별표4에 따른 전문 설계업(1종)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자

2) 정보통신분야 설계용역과업의 자격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정보통신)을 한 자

3) 소방분야 설계용역과업의 자격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 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등록을 한 자

4) 조경 및 도시계획분야 설계용역과업의 자격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조경, 도시계획)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조경, 도시계획)을 한 자

5) 건축구조분야 설계용역과업의 자격

-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건축구조)을 한 자

6) 토질 및 기초 설계용역과업의 자격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토질·지질)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 또는 토목구조)을 한 자

7) 건축기계설비분야 설계용역과업의 자격

-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건축기계설비 또는 공조 냉동기계)을 한 자(기계소방의 경우는 관련 법령에 따름)

다.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구조, 토질 및 기초 등 전문분야는 등록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자 자격 소지자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되 책임기술자가 총괄하여야 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사항

6.1 규정의 준수

- 가. 참가자는 설계공모에 등록함으로써 본 지침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지침을 위반한 참가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 나. 기타 본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6.2 무효 및 승계

- 아래의 경우에는 당선자에게 부여하는 설계권을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 순으로 승계할 수 있다.
 - 1) 당선자가 설계권을 포기한 경우
 - 2) 당선작에서 4.3. 심사기준, 다. 실격 고려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 3) 당선자가 원활한 설계 작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4)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6.3 사업 취소에 따른 보상

- 사업계획의 변경 등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당선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모안의 작성에 소요된 실비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당선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보상액을 당선자에게 지급한다.

6.4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제

- 가. 작품 제출업체 임직원 이외의 외부전문가가 계획에 참여한 경우 작품 제출 시 해당 전문가를 신고(서식 제5호)하여야 한다.
- 나. 미신고한 외부전문가가 심사위원회 선정되어 심사에 참여한 것이 확인된 경우 동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입상작은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 1) 시상 전: 입상 결정 취소
 - 2) 시상 후 설계용역 계약체결 전: 입상 결정 취소, 상장 및 상금 회수
 - 3) 설계용역 계약체결 후: 입상 결정 취소, 상장 및 상금 환수, 설계용역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선금 및 기성금을 회수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

6.5 분쟁

- 설계공모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발주기관 소재지의 법원에서 조정하거나 판결한다.

제2장 설계공모 설계지침

1. 사업 일반개요

1.1. 사업개요

가. 위 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500

위치도



1) 지역·지구 등

가) 일반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방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철도

나)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

2)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최고높이: 60m

※ 부산센텀시티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세부내용은 제공자료 별첨5 참조)

위치	구분	계획내용
우동 1500	용도	· 허용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일반업무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 최고높이 : 60m
	건축선	· 광로 2-10, 대로 2-25호선변 건축한계선 9m · 광로 3-22, 대로 3-84호선변 건축한계선 6m

나. 사업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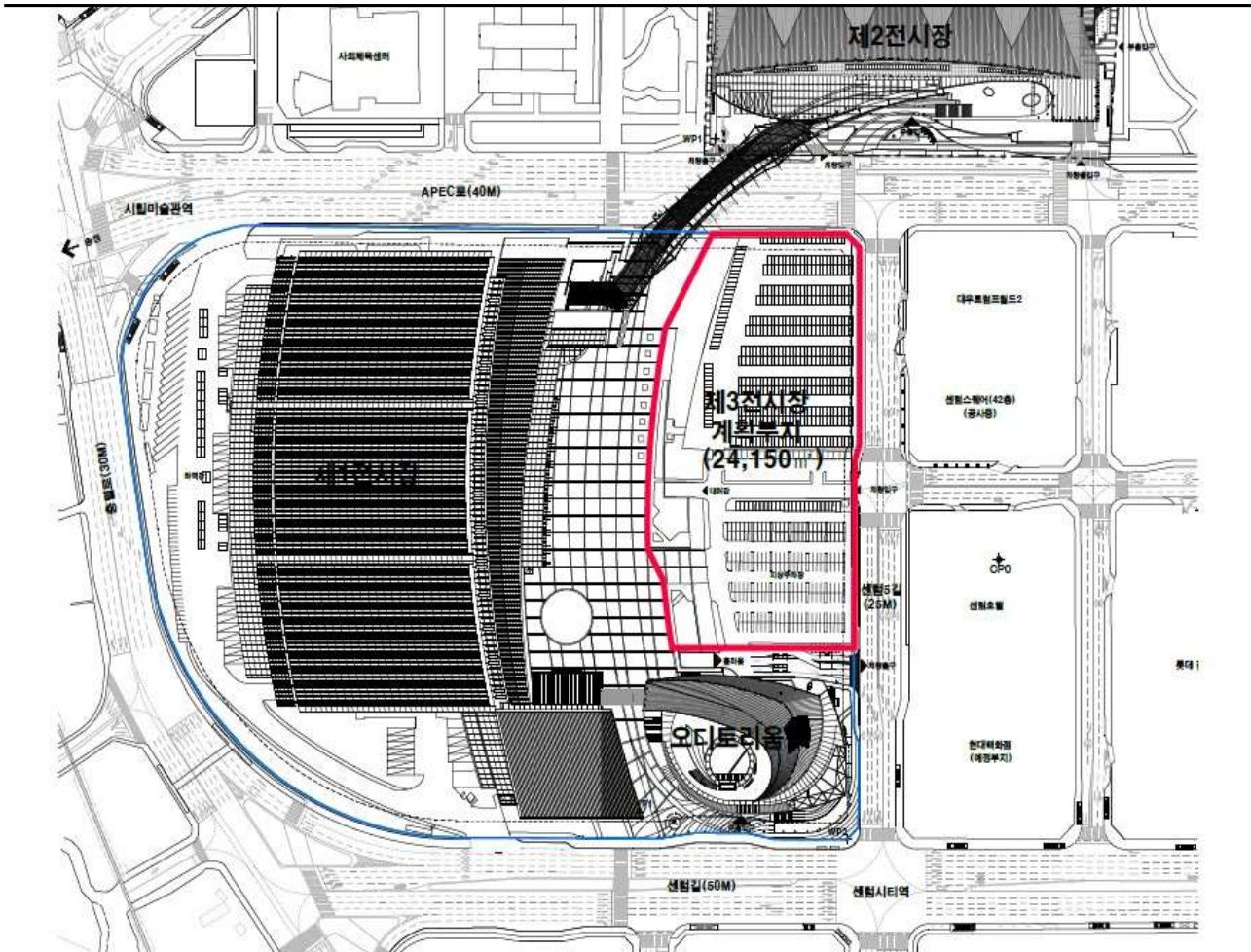
- 1) 대지면적: 124,544.2㎡ (제3전시장 대지면적 : 24,150㎡)
- 2) 건축(별동 증축) 예정 규모 및 용도
 - 가) 규 모: 층수 제한 없음, 연면적 70,500㎡(±3% 범위 내 조정 가능)
 - 나) 주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 다) 기존 건축물 : 제공자료 별첨7 참조
- 3) 총 공사비: 155,212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4) 설계비[기본(계획+중간)설계] : 6,403백만원
(조사측량비, 토질조사비, 설계안전성검토, 손해배상보험, 부가가치세 등 포함)
- 5) BIM 설계비[기본(계획+중간)설계] : 230백만원(부가세 포함) 범위 내
설계자는 기본설계단계에서부터 BIM(설계별 BIM 적용지침 준용)을 적용하여야 한다. BIM 설계를 위한 용역비는 본 용역 준공 시 정산 처리한다.
※ 총 공사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1.2. 사업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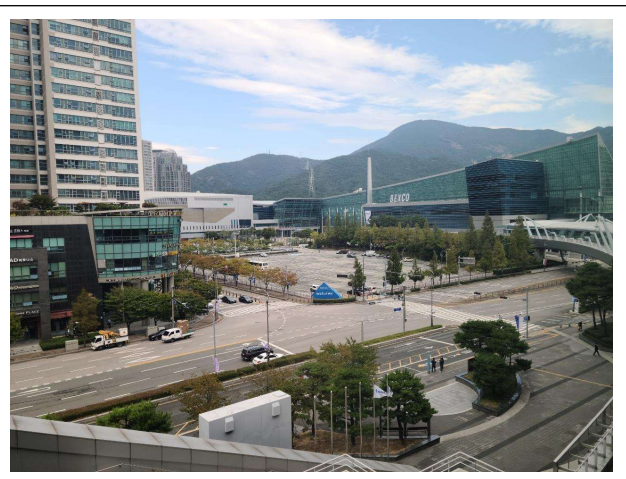
- 가. 벅스코는 부산의 전시산업분야 대표 인프라 시설로서 2012년 제2전시장을 확충 하였으나, 행사 규모의 확대와 함께 2014년부터 가동률 50%대로 진입, 2019년 기준 59.1%로 가동률 포화상태(매년 증가 추세), 전시면적 부족으로 대형전시회 및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어려움으로 부산 마이스산업 도약 한계
- 나. 벅스코 시설을 확충하여 하이브리드 기반 최첨단 방식을 적용한 전시장 건립으로 MICE산업 대형화 및 융복합화 트렌드에 맞는 국내외 인프라 경쟁력 확보
- 다.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국제관광도시 부산의 위상 제고 및 지역 균형 발전 도모

1.3. 대상지 현황

가. 부지 현황도 (※ 제공자료 별첨6 참조)



나. 현장사진



1.4 주요 시설개요 및 면적(안)

구분	세부시설	시설면적(m ²)	시설 참고사항
전시시설	전시장	17,700	· 층별 전시장마다 3분할 전시할 수 있게 계획 · 반자높이 10m 이상으로 계획
	소계	17,700	
회의시설	소·중회의실	3,600	· 소회의실, 중회의실 등 다양한 규모의 회의실 계획 · 소회의실은 전시장 활성화시설과 연계하여 계획 할 수 있다 · 각 회의실 간 통합·분할할 수 있게 계획 · 반자높이 4m 이상으로 계획
	대회의실	2,000	· 시설면적(2,000m ²) 이상으로 계획 · 반자높이 8m 이상으로 계획 · 조정실, 동시통역실(8개실)
	소계	5,600	±5% 이내로 계획
업무 및 지원시설	사무실	1,800	· 직원 사무실 및 행사 주최자 사무실
	창고		· 시설 관리, 이벤트 관리, 행사 주최자를 위한 창고
	소계	1,800	±5% 이내로 계획
서비스 및 영업시설	주방(catering)	3,200	· 전시 및 회의시설 내 연회서비스 제공 · 기존 제1전시장의 주방 규모를 고려하고,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게 계획
	전시장 활성화시설		· 홍보 및 판매 등 전시장 활성화를 위한 영업시설임
	소계	3,200	±10% 이내로 계획
공용시설	로비 및 안내시설	42,200	
	화장실, 계단실,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등		
	기계, 전기실		
	주차장		
소계	42,200		
총 연면적		70,500	±3% 이내로 계획

※ 상기 세부시설은 포함하여 계획하되, 제시된 세부 공간과 면적을 참고하여 관련 법규, 산출 근거와 향후 관리 및 변화 등을 고려하여 설계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기능 유지상 등 필요에 따라 공간을 추가(옥상 정원 등) 할 수도 있다.

※ 허용된 규모 범위(연면적의 ±3%)와 예정 공사비를 준수하여 합리적인 설계안이 될 수 있도록 제시

※ 향후 기본설계 시 유지관리 등 상황에 따라 세부시설 및 시설별 요구 면적은 조정될 수 있음

2. 기본 설계지침

2.1 기본방향

- 가. 본 지침은 일반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서면질의로 확인하여야 한다.
- 나.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 구조물이 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1) 설계 시에 부지의 환경조건,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축물의 외벽을 통과하는 열의 손실 방지 및 공기조화설비 관련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고려하여 건축물 관련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를 도모한다.
 -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 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기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3) 건물 자체가 에너지 절약적인 건물이 되도록 평면계획(실의 배치 등), 입면계획(적정 창 면적비 등), 단면계획(최적 층고 계획 등)을 하여야 한다.
- 다. 설계는 환경 친화형(Green Building System) 건축 설계를 적용하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과 쾌적성 향상을 위하여 각종 환경조절(제어) 시스템과 설비시스템이 최적화 되도록 한다.
-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해당 녹색건축물 인증 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등급의 기준을 적용토록 한다.
 - 2)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수해 방지 등을 위하여 빗물 저류조 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 3)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로운 조형성과 자연환기 및 빛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 4) 저탄소 환경친화적 체험관 구현을 위해 저 CO₂ 소비 자재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 라. 설계자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시 도로의 연결 관계, 지반상황, 우·오수관의 위치, 전기 인입점, 국선 및 유선방송 인입점 등은 물론 과거의 기상관련 통계 자료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마. 주차장은 진·출입에 지장이 없고 차량용 동선과 보행자의 동선이 분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바. 실내공간은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용이한 오픈 공간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2.2. 설계지침

2.2.1. 배치계획

- 가. 기존 전시장 및 기타 시설물 등의 현황과 근무 인원, 관람객 수용 및 장래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고 기존 전시장과 연계성 극대화,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간과 효율적, 기능적인 외부공간이 되도록 배치한다.
- 나. 센텀시티라는 도시 맥락 전반에 대한 검토와 함께 센텀3로가 센텀시티의 명실 상부한 메인스트리트로 거듭날 수 있도록 토지이용 및 배치계획을 고려하고, 옥외주차장 부지 활용으로 인한 기존 제1전시장 및 제2전시장과 기능적 혼돈감이나 경관적 차폐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다. 부산시립미술관(현재 리모델링 계획설계 중)에서 APEC로, 센텀3로 그리고 센텀남대로, 센텀중앙로 및 센텀5로, 센텀6로, 영화의 전당, APEC 나루공원 및 수영강 보행전용교(휴먼브리지 설계중)를 연결하여, ‘걷기 좋은 센텀’을 지향하는 센텀시티의 보행재구조화 구상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를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제3전시장의 배치, 보행 및 차량동선을 적절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 라. 기존 제1전시장, 제2전시장은 물론 인접한 부산시립미술관과 센텀3로에 면한 센텀호텔 및 인근 업무시설 그리고 벅스코 부대시설부지 등의 건축물 및 건축 외부공간, 공개공지 및 보행여건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외부공간 계획을 한다.
- 마. 부산시립미술관에서 센텀3로와 센텀중앙로를 잇는 센텀시티의 메인스트리트 축 조성 구상을 감안하여, 센텀3로의 가로·보행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대형목적형 전시를 넘어 MICE 문화의 일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대안적 제안을 적극 검토한다.
- 바. 관련 법령, 고시, 기준, 지구단위계획 등 제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 부산센텀시티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고 주변 개발계획 현황을 고려하여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아. 각종 시설물은 이용자 측면의 편의성, 효율성과 경관미를 높일 수 있도록 공간적 특성에 적합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 자. 기존 제1전시장 및 제2전시장과 연계성을 고려하고 신설 제3전시장을 포함한 전체 전시장의 통합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을 설계한다.
- 차. 소음 등 환경 위해요소 최소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카. 부지의 진출입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보 이용객의 편의를 고려하고 단지 내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위치를 설정하도록 한다.
- 타. 부지 형상을 고려하여 부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도록 한다.
- 파. 계획부지 내에서 건물 간 계획, 조경 및 시설물 등은 서로 합리적인 체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상호 간의 적절한 연계와 분리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한다.
- 하. 공간개방(Open Space), 옥외광장 등은 집중배치를 통해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게 한다.
- 거. 지형과 부지 형태를 고려하여 자연적 형태의 녹지 순환 체계가 시설물을 에워싸는 자연 친화적인 환경으로 계획한다.
- 너. 전시장 자체로서의 미관은 물론 향후 개발될 주변 건물과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2.2.2. 동선 및 교통계획

<기본개념>

- 가. 차량 동선 및 보행자 동선, 관람자 동선, 전시주최자 동선 등은 시설물의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상호 보완적이며 서로 상충하지 않도록 한다.
- 나. 계획부지 내에서 각 동선은 합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상호 간의 적절한 연계와 분리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한다.
- 다. 화재 등 재해 시 소방차 등 대형차량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라. 부지 진출입구 등의 교차점 가각부는 곡선 처리하고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한다.
- 마. 일반 및 서비스 차량의 진출입동선 및 구간은 지구단위계획 및 지침 등에 따르며,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자가 제안한다. 기본적으로 일반차량 및 서비스 차량의 동선은 분리하여 교차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내부동선>

- 가. 관람자 동선과 전시 장치, 시설관리자 등의 서비스 동선이 서로 교차하지 않고 분리되도록 하며, 관람객 및 작업자를 위한 화장실, 휴게실, 사무실 등도 분리하여 계획한다.
- 나. 수직 동선 체계는 사람이나 화물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보행 동선>

- 가. 부지 출입구에서 로비에 이르는 보행로 동선은 차량 동선과 교차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 나. 보행 동선은 제1전시장의 옥외광장, 제1, 2전시장 간 공중보행통로 등과 연계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다. 주 보행로에는 계단설치를 지양하고 보행 활동에 쾌적함을 줄 수 있는 재질 및 문양을 사용하도록 한다.

<차량 동선>

- 가. 차량 동선은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차량 진입이 편리하게 하고, 주변 교통흐름 및 보도 보행자의 안전사고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나. 다량의 고객 차량이 원활히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 다. 서비스 차량은 별도의 동선을 확보하여 이용객 차량 동선과의 상충을 피하도록 한다.
- 라. 각종 전시물 등의 설치가 편리하도록 전시행사 차량이 전시홀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하게 한다.
- 마. 전시행사 차량의 진출입구 및 하역장은 대형차량의 회전 등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두고, 주변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바. 지하주차장 계획 시 제1, 2, 3전시장 간 지하주차장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하 차량동선 연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2.3. 평면계획

<기본개념>

- 가. 벅스코 제3전시장의 건축 설계는 지역적 특성, 동북아 최고의 전시장, 부산을 상징할 수 있는 Smart City 개념이 표현되도록 하며, 특히 기존 전시장을 포함한 전체 전시장의 연결 동선 확보, 전시장 이용의 효율성, 기능성, 저에너지, 저관리비(L.C.C) 개념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한다.
- 나. 본 부지가 협소한 상태를 감안하여 과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숙지하여 단지 전체의 개방감을 확보하고, 외관 구성 디자인뿐만 아니라, 전시장 기능의 실용성을 중시한다.
- 다. 관람객 및 시설물 이용자가 전시장과 기타 시설물을 인지하고 진행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공간 구성을 한다.
- 라. 향후 각종 시설의 관리 및 통제가 편리하고 운영의 합리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마. 활기찬 전시장을 조성하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구현하도록 한다.
- 바. 건축물의 조형미, 개방감, 입체감 등의 새로운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 사. 각종 시설물은 중앙 집중관리 및 통제가 편리하며, 최소 요원으로 운영, 관리가 가능하도록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 아. 실의 용도에 맞는 모듈을 선정하되 가변성 및 개방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 자. 기능별 동선 유도 및 관람객, 차량 등의 동선 분산을 고려하여야 한다.
- 차. 실의 형태는 그 실의 용도에 적합하여야 하며 실의 장단변비는 사용에 가장 적합한 모듈을 계획한다.
- 카. 노약자 및 장애인과 일반 이용자 및 시설물 관리자 등의 편의성을 고려한다.
- 타. 전시장 앞 로비(콩코스)는 대형 개막행사 및 관람객 대기 등을 위하여 충분한 폭(15m 이상)과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 파. 건축물의 외벽을 이용한 옥외광고물 표시를 위한 대형 현수막 거치대를 정면 및 측면부에 설치하고, 정면부 지상층 주출입구 상단에 가로형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거치대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계획조건>

- 가. 기능별 구획이 독립되면서 상호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 서로 연계된 평면 및 입체를 구성시킨다.
- 나. 승용 승강기는 법적 대수 이상으로 기능상 충분하고 사용상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사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기준 이상의 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 라. 건물은 상호 유기적인 공간 구성과 외부 조경 공간 및 야외시설물의 기능과도 연계하여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마. 평면 규모 계획은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바. COVID-19 등 감염병 등으로 시설물의 부분 혹은 전체 출입 통제가 요구될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간계획을 고려한다.

2.2.4. 입면계획

<일반사항>

- 가. 벅스코 제3전시장이 추구하는 특화되고 미래지향적인 상징성과 이용객에게 친근함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조화로운 이미지를 갖도록 한다.
- 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친환경적 조형성을 고려한다.
- 다. 첨단시대에 부응하는 조화 있는 외장 마감 및 미관 처리를 고려한다.
- 라. 한국 대표 전시장으로서 위상을 반영할 수 있는 독창적이고 새로운 이미지를 전달한다.
- 마. 용도 및 기능별 독창성을 부여하되 단지 전체가 조화될 수 있는 입면을 고려한다.
- 바. 각 시설 고유의 분위기를 살리도록 한다.
- 사. 건물의 창호는 열 손실을 방지하고 외부소음 등으로부터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차광 및 보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 아. 패시브적 접근으로서 실내의 자연환기 및 자연채광 등을 창의적으로 고려하며, 특히 창호부를 통한 과도한 일사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외부차양 등을 고려한다.

<유의사항>

- 가. 사용재료는 내구성 및 유지관리가 우수한 것으로 한다.
- 나. 지붕 상부에는 태양광 시스템을 그리고 외벽면의 경우 필요에 따라 BIPV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다. 건축물의 높이는 전시장의 기능과 융통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라. 디자인 요소는 통일성이 있게 하여야 한다.
- 마. 형태 및 색상은 서로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 바. 정면 및 측면에 외벽을 이용한 대형 배너 거치대 설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 사. 과도한 창면적으로 하절기 일사 유입에 따른 실내 열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창면적비를 적정하게 계획하며, 차광시설물의 설치도 고려한다.

2.2.5. 단면계획

- 가. 기능별 조닝(zoning)을 통해 서로 독립이 되면서, 업무상 상호 유기적 연대가 가능하도록 수직 동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나. 우수의 침투를 방지하고, 바닥의 단차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수직 동선 등의 경우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인접도로면과 인접부지 지표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 다. 창대 및 난간(발코니 등) 높이를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 라. 천장은 기능과 실면적에 따라 적정한 높이가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 마. 지하 주차장 경사램프 출입구에는 우수범람을 대비한 분리가 가능한 차폐막 설치를 반영한다.
- 바. 층고는 각 실의 용도 및 기능에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 사. 기능별 조닝(zoning)을 통해 서로 독립되면서 상호 연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용도별 및 실별 천장높이가 다양함을 감안하여 실별로 적절한 층고 산정을 하여야 한다.

아. 큰 체적을 요구하는 실의 천장고는 적정 체적의 계산식과 실내 체적감에 의해 계획하여야 한다.

2.2.6. 재료 및 색상계획

- 가. 외부재료와 구조는 반영구적인(내구성이 강한) 재료로 하며, 유지관리에 편리한 마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 나. 사용 자재는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연자재로 설계하여야 한다.
- 다. 공기 단축 및 노무인력 절감을 고려하여 가능한 건식공법을 채택하며 많은 종류의 재료 사용을 피하고 인체에 유해한 자재를 사용할 수 없다.
- 라. 누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재료 및 구조를 선택하여야 한다.
- 마. 실내 마감은 건축 음향설계에 따라 반사 및 흡음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바. 주요 실의 출입문은 자동도어를 채택하고, 특히 주출입구의 출입문은 자동도어 및 방풍구조로 하여야 한다(손끼임 방지 포함).
- 사. 출입 통제 시스템(방법 및 보안)은 기존 시설과 상호 연동이 될 수 있는 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아. 디자인 컨셉에 부응하는 내·외부 색채계획을 하도록 한다. 색채계획에서 제시된 색채는 표준 색채 기호로 표기하며, 인허가기관의 경관위원회 심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2.2.7. 교통 및 주차계획

- 가. 설계자는 옥외(하역장), 옥내 주차장을 계획한다.
- 나. 벅스코 제3전시장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수는 총 1,048대 이상을 계획하도록 하고, 기존 제1, 2전시장 지하 주차장과 함께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동선 체계를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다. 주차장의 입구와 출구는 가급적 분리하여 계획하며 명확하고 원활한 차량 동선 체계를 확립한다.
- 라. 주차장은 자주식 주차 방식으로 계획하고, 카스토퍼(Car Stopper) 및 코너가드(Corner Guard)를 설치하고 주차구획 라인마킹을 포함한다.
- 마. 주차장 주변은 적절한 식재를 통해 완충녹지를 형성하여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차선 및 구획표시와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 바.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을 고려한 교통 및 주차계획을 반영한다.
- 사. 장애인 주차구획은 수직 동선 인근에 배치하여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장애인주차장에서 건물 내부로의 진입 동선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반영하여야 한다.
- 아. 주차장은 기능별(일반형, 확장형, 경형, 장애인, 임산부, 전기자동차 등)로 주차구획을 구성한다.
- 자. 드롭오프(Drop-Off) 구역의 설치를 계획하고 대형버스 등 차량에서 하차 후 전시장 주출입구까지 진입 가능한 보행 동선의 확보 및 그 상부에는 방수구조의 캐노피 설치를 계획한다.
- 차. 하역장에 대형버스 주차 가능한 장소를 마련하고, 대형버스에서 하차한 방문객이 행사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보행 동선을 계획하여야 한다.

- 카. 옥내 지하 주차장의 경우에는 다음 항목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이용객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보행 동선을 감안한 주행로 계획과 각 건물 등으로의 연결 동선이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 2) 주차장의 출입구는 안전성, 사용성 및 편리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보행자나 타 차량 이용자가 출입 차량을 감지할 수 있도록 최소 5m 이상의 안전 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출입구는 2개 이상 설치한다.
 - 3) 주차장의 경사로는 강설, 강우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캐노피 설치를 고려하고, 지하 주차장 경사로 입구에는 우수범람을 대비한 분리가 가능한 차폐막을 설치한다.
 - 4) 주차장의 경사로는 가능한 직선 형태를 고려하고, 법정 최소폭보다 여유 있게 계획하여 관람객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한다.
- 다. 하역장 부분에는 대형버스, 각종 트럭 및 화물 운반 차량, 지게차 및 중장비 차량 등이 대기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계획한다.
- 파. 하역장의 입구와 출구는 가급적 분리하고, 대형화물 트레일러 등 전시 물품 반입 및 기타 화물차량의 원활한 차량 동선을 계획한다.
- 하.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설치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거. 장애인 주차단위구획은 「주차장법」 및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설치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전용주차 구역을 설치한다.

2.2.8. 부문별 시설기준

<전시시설>

- 가. 전시장 면적 합계는 17,700㎡ 이상이 되어야 하며, 층별로 3분할 전시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나. 전시홀은 고급 전시, 대형 연회, 각종 이벤트 행사 등(가수 쇼, 공연 등)의 다목적 행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계획을 하고, 각종 행사 시 사각(死角)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다목적 행사를 고려하여 충분한 흡음 성능을 갖도록 마감 계획을 하고 원활한 행사를 위하여 반자높이 10m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다. 전시홀 내부의 칸막이는 방음 전동방식의 칸막이(전동 무빙월)를 설치한다.
- 라. 각 전시홀은 합리적인 기둥 모듈을 제안하여야 하며, 경제성 및 사각지대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전시행사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특히 전체 전시홀을 통합하여 사용할 경우 이벤트, 공연 행사 등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마. 전시홀의 바닥 적재하중은 구조적인 합리성을 고려하여 1층은 5t/㎡으로 적용하고, 2층 이상의 층은 3t/㎡ 이상으로 적용한다.
- 바. 전시홀은 최대한 가변성을 고려한 설계가 되어야 하며, 원활한 동선 처리와 함께 합리적인 모듈화 계획으로 융통성 있는 공간 이용이 가능하게 한다.

- 사. 전시홀은 서로 독립적인 홀로 분할하거나 하나의 대형 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분할되어 사용되는 각 홀은 동시다발적인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차음, 음향, 동선, 보안, 관리 운영 등에서 상호 간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아. 분할된 전시홀은 각 전시홀 간 소음 90dB 환경에서 50~60dB의 소음레벨(차음성능)을 유지하고 전동으로 움직이는 이동식 칸막이로 융통성 있는 분할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 자. 전시주최자 동선 및 관람자 동선은 분리하여야 하며,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규모 인원의 피난 및 방재를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 차. 하역장은 전시홀을 이용하는 트럭 등 작업 차량의 접근성 및 하역작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진출입 시 회전 및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경사 및 곡선 확보, 12ton 화물차량의 진출입 가능 등).
- 카. 전시홀은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밝기가 조정되는 조명시스템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LED 조명등).
- 타. 전시홀의 지붕 구조재는 이동식 칸막이용 트랙의 설치가 고려되어야 하며, 전시주최자의 각종 전시용 중장비(트러스, 조명기구, 광고판, 디스플레이 등)들이 매달릴 수 있도록 리깅(Rigging)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고 리깅(Rigging) 하중은 독립 부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구조를 확보(절점당 최소 0.5t 이상)하여야 한다. 또한, 천장에 설치된 각 설비의 관리·보수용 통로(Catwalk, 사다리 등 포함)와 작업공간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며 지붕 구조재에 공조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 파. 전시홀 바닥에는 전기, 통신, 데이터, 수도, 전화, 압축 공기관, 배수 등 각종 전시에 필요한 유틸리티 설비 공간을 고려하여 적정 간격(9m 내외 권장)으로 공동구(PIT) 및 설비구를 설치하여야 하고, 공동구의 경로, 물 등을 제거하기 위한 자동 배기, 배수장치도 설치해야 한다.
- 하. 전시홀 출입문은 방음 성능이 확보되는 방화문을 계획하고, 화물 출입구는 대형화물 트레일러가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너비와 높이(6×6m 이상)를 가진 미닫이식 슬라이드형 도어를 설치하여야 한다.
- 거. 전시주최자 사무실에서 전시홀 내부와 로비(콩코스)로 각각 직접 연결되는 동선을 계획한다. 전시주최자 사무실에는 방송시스템을 설치하고 전시홀 내부 전체를 관망할 수 있는 조망창을 설치한다.
- 너. 국제모터쇼, 지스타, 철도전, 보트쇼, 방위산업전 등 대형 행사 개최에 대비하여, 대형 전시물의 반입이 편리한 구조이어야 한다.
- 더. 각 전시홀 내부, 전·후면에 화장실을 반영하고, 여성용 화장실은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회의시설>

- 가. 회의실은 세미나, 학회, 연회 및 다른 용도로 이용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으로 계획한다.
- 나. 모든 회의실은 프레젠테이션, 전동스크린 및 전동바텐(Batten)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실의 분할·통합에 따라 모두 적용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대회의실의 고정무대 부분에 대형 LED 전광판을 설치한다(기존 제1전시장 컨벤션홀 205호 설치사례 참조).

- 다. 모든 행사나 다양한 회의의 크기와 종류에 적합한 식음료 서비스가 가능하게 한다.
- 라. 회의실은 충분한 반자높이를 확보한 무주 공간으로서 미적인 공간연출이 가능하고, 시청각 프레젠테이션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문가에 의한 음향설계를 통하여 명료한 음성 전달 확보와 다양한 장르의 행사 수행에 적합한 음향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마. 회의실에는 음향시스템과 비디오 및 슬라이드 프로젝트 등의 설치가 가능한 영상실 및 제어실을 두어야 한다. 제어실과 무대 사이에는 컨트롤케이블(Control Cable)이나 접근통로를 두고, 예상되는 무대 위치에는 빔프로젝터, 전동스크린 및 전동바텐(현수막 걸이대)을 설치한다.
- 바. 대회의실은 격납창고를 갖추고 전동형 이동식 칸막이에 의해 2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계획이 되어야 하며, 분할된 회의실에서 동시에 회의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각종 A/V 설비 등의 제반 사항 설치를 계획한다. 반자높이는 8m 이상으로 하며 조정실, 동시 통역실(8개소), 별도 로비를 계획하고, 전체 면적은 가급적 2,000㎡ 이상으로 계획하며 고정식 무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사. 대회의실 이외의 각 회의실은 이동식 칸막이에 의해 통합 및 분할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분할된 회의실에서 동시에 회의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각종 A/V 설비 등의 제반 사항을 설치하여야 한다. 반자높이는 4m 이상으로 한다.
- 아. 회의실 바닥은 다목적 사용을 고려하여 평탄하게 하고, 창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모든 회의실에는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영상장치를 입구에 설치한다.
- 자. 회의실 형태의 비율은 1:1.25 또는 1:1.5의 비율을 우선하여 검토한다. 회의실이 통합, 분할되었을 경우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장단변비를 계획한다.
- 차. 회의실은 개별 냉방장치(EHP 시스템)를 갖추어야 하며, 분할된 각 공간은 온도, 조명, 시청각 기자재가 개별적으로 조정되도록 한다.
- 카. 회의실의 내부마감은 회의, 연회, 엔터테인먼트 등의 실 용도에 적합하도록 호텔식의 고품질, 장식적 마감을 원칙으로 하며, 실 기능에 필요한 조명, 프레젠테이션 장비, 음향 장비 등 제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 타. 회의실의 안내·접수 공간, 라운지, 리셉션·휴식 공간 등은 회의실과 인접한 곳에 배치하고, 로비와 회의실로 통하는 통로는 여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 파. 회의실은 전시홀 및 로비 소음, 인근 도로의 차량 소음이 전달되지 않도록 이중문과 방음창을 계획하고, 회의 진행 시 타 회의실 간의 소음 차단, 전파간섭 차단 등의 문제 또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 하. 다목적 활용을 위해 각종 비품 및 의자, 케이터링 테이블, 책상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대형 창고 공간을 반영하여야 하며, 일부는 회의실과 바로 인접되게 설치하여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계획한다.
- 거. 회의실은 전시장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너. 회의실은 이용자 동선과 서비스 동선을 구분하여 계획한다.
- 더. 회의실은 물품서비스 및 물품의 수직이동이 용이해야 한다. 케이터링 서비스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방과의 서비스 동선 연결을 편리하게 한다.
- 러. 컨벤션 행사를 위한 라운지, 주최자사무실, 홀 매니저사무실 등을 계획한다.
- 며. 물품 서비스 및 케이터링 수직 동선을 위한 대형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업무시설>

- 가. 업무시설의 출입은 관람객 동선과 분리하고 보안 구역으로 계획하며, 향후 시설 및 조직의 변화 등에 대비하여 사용에 있어 기능적이고 융통성이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나. 사무공간의 독립적인 동선을 계획하며, 사무공간 성격에 따라 인접한 곳에 직원 회의실, 직원휴게실(폐쇄형), 오픈형 휴게공간 등을 적절하게 배치한다.
- 다. 전시관계자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규모의 업무사무실을 계획하여야 한다.

<지원시설>

- 가. 지원시설 동선은 기본적으로 전시 관람 동선과 분리하여야 한다.
- 나. 각 전시홀에 대한 서비스·지원 공간은 다른 홀과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분리되어야 한다.
- 다. 시설관리, 이벤트 관리, 전시장 이용자(주최자)를 위한 창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라. 각 전시홀 단위마다 행사주최 측을 위한 주최자사무실 공간을 설치하여 인터넷 설비를 구축하고, 주최자의 업무공간 및 행사준비물의 보관이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 마. 각종 전시 물품 보관용 창고는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하고 물품 반입용 차량의 동선을 고려한다.
- 바. 각종 창고는 해당 창고의 기능을 고려하여 충분한 높이의 천장고를 확보하도록 하고 하역 동선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최대한 화물용 EV에 인접하도록 한다.

<서비스시설(식·음료)>

- 가. 케이터링 주방은 전시장 및 컨벤션시설 내 연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케이터링 주방 규모 및 주방 설비의 종류는 수요기관과 반드시 협의하여 결정한다.
- 나. 케이터링 주방은 기존 제1전시장의 케이터링 주방의 규모, 설비 등을 고려하고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라. 서비스시설(식·음료)은 환기 및 음식물 반·출입, 쓰레기 처리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가급적 집중하여 배치한다.
- 마. 서비스시설(식·음료)은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공조 및 급배수 설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 바. 주방 설계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고려하여야 한다.

<영업시설>

- 가. 전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수익 확보가 가능한 시설들을 제안하여야 한다(영업시설, 업무시설, 식음시설, 창고시설, 여가시설 등).
- 나. 전시장 활성화시설은 연결통로 및 서비스시설(식·음료)과의 연계 및 조닝을 고려하고, 전시행사가 없을 경우 최소 공용 공간의 개방을 통하여 전시장 활성화시설 및 서비스시설(식·음료)의 단독 운영이 가능하도록 고려한다(에너지 절감 계획, 보안 등을 위함).
- 다. 전시장 활성화시설(영업시설, 식음시설, 여가시설 등)의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센텀3로 도로변 지상1층에 활성화시설을 조성할 것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공용시설(로비 및 안내시설)>

- 가. 로비는 관람객의 전시홀로의 주 접근 공간으로 좌우 방향 이동, 매표, 접수 및 안내, 대기행렬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폭(15m 이상)과 면적을 확보하며, 관람객의 대기 및 휴게가 편리하도록 구성한다.
- 나. 전시장 관람객과 회의시설 이용객 등 각 시설로의 접근 동선이 원활히 이루어져 혼잡한 공간이 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 다. 시설안내를 위한 각종 통신·전자 기기 및 사인보드 등은 인지가 편리한 위치와 형식으로 계획하며, 부출입구 또한 명확히 식별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라. 로비가 부대 행사장으로 활용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전시물 홍보 등을 위한 전기설비 및 데이터 전송 단말기 연결설비는 기둥, 벽, 바닥 등에 다양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마. 이동식 티켓 판매 부스 등의 설치를 고려하고, 2인 이상 동시 탑승 가능한 크기의 에스컬레이터를 최소 2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바. 안내 및 리셉션은 주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키오스크(Kiosk) 형태로 설치할 수 있으며, 방문객을 위한 안내 책자, 보관용 창고, 컴퓨터 모니터 장비 등을 갖춘다.
- 사. 행사 및 시설 관련 문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내 및 리셉션 시설은 전시 피크타임 시 가능한 많은 근무 직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오픈플랜을 계획하고, 안내데스크 상부 공간 등 인접한 곳에 관람객이 다양한 행사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를 연계하여 설치한다.
- 아. 휴게 의자 등 관람객의 대기 및 휴게시설을 충분히 설치한다.
- 자. 자연채광, 자연환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필요한 부분에 롤스크린을 설치한다.
- 차. 쾌적한 분위기의 로비를 연출할 수 있는 공간계획을 한다.
- 카. 로비의 전등 등의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고소작업차 등이 ‘외부에서 로비’, ‘로비에서 전시장’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대형출입문을 1개소 이상 반영한다.
- 타. 전시홀 입구, 로비 천정 공간, 로비 내 기둥, 벽체 등 참관객들의 동선이 많은 곳에는 다양한 형태 및 기능을 연출할 수 있는 대형 LED 전광판을 충분히 설치하여 주최자들이 현수막이 아닌 대형 LED 전광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전시홀 출입구에는 전시홀 입구마다 대형 LED 전광판을 반영하여야 함).
- 파. 전시장 홀 매니저실은 1층 로비에 설치하며 가급적 전시장 중앙 및 안내데스크와 인접하게 배치한다. 출입문은 자동도어를 채택하고, 대형 LED 모니터를 홀 매니저실에 설치하여 전시장 및 하역공간 내 설치된 CCTV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하. 회의실 홀 매니저실은 회의실과 같은 층에 설치하며, 각 회의실에 설치되는 CCTV의 확인 및 제어가 가능한 대형 LED 모니터를 설치한다.
- 거. 무인 물품보관소 등을 로비에 배치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너. 로비에 비즈니스 라운지를 설치하여 방문객에게 비즈니스 및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리셉션, 고객 부스, 각종 장비공간, 고객 업무공간 및 관리 공간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한다.

<공용시설(승강기 등)>

- 가. 기능 및 피난을 고려하여 에스컬레이터, 승강기, 계단실 등의 통로를 배치하며 에스컬레이터는 2인 동시 탑승이 가능한 넓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 나. 장애인 및 노약자를 고려한 승객용 승강기를 반영한다.
- 다. 식·음료 및 각종 장비·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대형화물용 엘리베이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 라. 화장실은 방문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분산 배치하고, 남녀구성비는 남녀화장실 대기시간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마. 남·여 장애인 화장실, 의무실, 경찰 대기실 및 소방 대기실, 수유실, 유아 휴게실을 반영한다.

<공용시설(기계, 전기실)>

- 가. 기계실, 전기실은 지하 주차장에서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 나. 보안실, 데이터실, 주차사무실, 방재센터, 영상센터, 조정실, 통신 관련 실 등은 액세스플로어로 계획한다.
- 다. 공조실 등 소음, 진동이 심한 구역 하부에는 사무실 등을 계획하지 아니한다. 불가피하게 사무실 등을 설치할 경우 방진 대책을 마련한다.
- 라. 제3전시장 방재센터는 제1전시장 방재센터와 연동 및 통합 방재센터로 계획하여야 하며 확장을 고려하여 충분한 면적을 가져야 한다. 방재센터 및 운영요원 실은 전기실과 기계실 등 전체를 감시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고 제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기타사항(하역공간 등)>

- 가. 전시 면적 1,000㎡당 적어도 트럭 1대의 하역공간이 필요하며, 하역 데크 상부에는 별도의 지붕이나 차양을 설치하여 비바람으로부터 전시물을 보호하고, 하역공간 내 야외 화장실·휴게실을 반영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계획한다.
- 나. 하역공간 내에 대형버스 주차 가능한 공간을 마련하고, 전시용 행사 차량과의 간섭이 최소가 되도록 계획한다.
- 다. 전시홀 모듈당 작업 차량이 전시홀 내부까지 진입할 수 있는 출입구 1개소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하역장의 천장고는 모든 차종의 이용이 가능하고 전시홀로 전시 물품이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높이로 하여야 하며, 하역장에서 전시홀로의 대형 화물차의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미단이형 슬라이딩출입문(폭×높이: 6m×6m 이상)을 설치한다.
- 라. 전시장 화물처리를 지원·관리하는 사무실, 화물·전시 부스 자재 등을 반입·작업할 수 있는 작업장, 화물 및 각종 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 등을 하역장 근처에 계획하여야 한다.
- 마. 하역장 공간은 40m 이상 폭의 공간 확보를 계획하며, 보안상 하역장 공간은 벽 또는 울타리 등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
- 바. 회의실 부속 조정실, 동시 통역실 등은 회의실 내부에서 진행되는 회의내용의 시청 및 청취를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사. 전시홀은 층별로 시청각·음향 장비 조정실을 두어 음향, 조명 등을 제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아. 제3전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를 집적, 분류,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의 쓰레기 집적소 및 처리시설을 하역공간에 설치한다.

<연결통로(제1, 2, 3전시장을 연결하는 연결통로)>

- 가. 기존의 제1, 2전시장과 제3전시장의 연계성, 통합성을 위해 제1, 2, 3전시장 전체를 통합 연결하는 공중 연결통로를 계획한다.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 고려하여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며, 이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연결통로 설치를 위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한다.
- 다. 연결통로 및 연결되는 부분은 원활한 이동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라. 연결통로 공사비 및 연결에 필요한 기존 제1, 2전시장의 변경되는 부분을 총공사 금액 내에 포함하여야 한다(연결통로 공사비, 기존 시설 철거·이설·변경 등 제반 비용 포함).
- 마. 효율적 주차공간 확보와 이용을 위해 기존 전시장과 지하주차장 연결방안(비개착식 공법 등)을 계획한다.

<기타 외부공간>

- 주차 차량 진출입을 위한 차량 게이트, 대형사인(Signage), 정산 부스, 안내사인(Signage) 등 주차 관련 제반 시설물을 설치하며, 기존 시설물과 연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9. BIM 과업범위 및 대가의 지급

- 가. ‘조달청 시설사업 BIM적용 기본지침서 v2.1’ 을 기준으로 BIM데이터를 작성하고 BIM 성과품을 납품한다.
- 나. BIM 상세수준별 적용 단계

구분	BIM 레벨 (상세수준)	표현수준	유사기준
계획설계	BIL20 이상	- 계획설계 수준에서 필요한 형상의 표현 - 설계조건검토 - 규모검토, 개략공사비 검토 - 3차원 협의 가능도면 - 건물 외관 디자인 검토 - 건물 주요 내부 디자인 검토	LOD200
중간설계	BIL30 이상	- 기본설계 수준에서 필요한 형상의 표현 - 입찰에 필요한 수량 산출수준 - 정확한 기본도면 및 인허가 도면 작성 - 부재의 존재 표현 - 시공성검토 및 LCC 분석	LOD300

※ 건설산업 BIM 시행지침(설계자 편) 참고(국토교통부, 2022. 7.)

- 1) (계획설계단계) 건축, 구조, 토목 분야를 최소 대상으로 한다. 각 분야별 BIM 데이터 작성 범위는 BIM 적용 기본지침의 “최소 부위 작성대상” 내용 이상으로 한다.
- 2) (중간설계단계) 건축, 구조, 기계, 토목 분야를 최소 대상으로 한다. 각 분야별 BIM 데이터 작성 범위는 BIM 적용 기본지침의 “최소 부위 작성대상” 내용 이상으로 한다.
- 3) 수급인은 용역 착수 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최종적인 BIM 상세수준을 정하고 “BIM 업무수행계획서(조달청 BIM 업무수행계획서 표준 템플릿 준용)”에 명기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BIM 설계대가의 설계변경 및 사후정산

- 1) BIM 설계대가의 산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8조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한다.
- 2) 수급인은 BIM 업무수행계획서에 근거한 “BIM설계대가 산출서” 및 “인력 투입계획서(등급 및 투입기간 포함)”를 착수 시 제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수급인은 BIM 적용에 따른 비용(BIM 설계대가 사후정산서 첨부)을 최종 설계납품 단계에서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 4)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BIM 설계대가 사후정산서의 BIM과업 수준, 난이도, 인력등급, 투입기간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최종 승인 후 설계변경 및 대가를 지급한다.
- 5) BIM 설계를 위한 용역비 ₩230,000,000원(부가세 포함)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및 사후정산 한다.

3. 각종서식 및 제공자료

가. 서식

- 1)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서식 제1호)
- 2) 서약서(서식 제2호)
 -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서식 제2-1호)
 -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서식 제2-2호)
- 3) 공동응모 협정서(공동응모시에만 작성) (서식 제3호)
- 4) 대표건축사 선임계(공동응모일 경우, 동일회사 복수인원 참가시에 한함) (서식 제4호)
- 5)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서(서식 제5호)
- 6) 보안각서(서식 제6호)
- 7) 청렴서약서(서식 제7호)
- 8) 설계공모 심사위원 기피 신청서(서식 제8호)

나. 별도 제공자료 [※ 참가등록한 자(업체)에 한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 제공도서 및 자료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는 이 설계공모 외 다른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다.

- 1) 설계설명서(서식) (별첨 1)
 - ※ 서식 내 면적 표기, 조감도/투시도, 도면 표기 등은 지침의 기준에 맞추어 작성
- 2) 대상지 일원 연속지적도 (별첨 2)
- 3) 대상지 일원 수치지형도 (별첨 3)
- 4) 지반조사 보고서 (별첨 4)
- 5) 부산센텀시티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관련자료 (별첨 5)
- 6) 전체배치도(사업대상지 범위 표시) (별첨6)
- 7) 기존건축물 설계개요(기준), 벅스코 제1,2전시장 배치도, 각층평면도, 단면도, 건축 개요 자료 (별첨 7)
- 8) 교통영향평가 관련 자료 (별첨 8)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본인은 『백스코 제3전시장 건립사업』 기본설계 제한공모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에서 선정된 심사위원 명부를 열람하였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3. . .

○ 대표업체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공동응모업체(자)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공동응모 협정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벙스코 제3전시장 건립사업』 기본설계 제한공모를 (), ()가 공동으로 응모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체 및 개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명칭 등) 공동응모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와 같다)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
2. 소재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응모의 구성원) 대표업체(자)를 제외한 공동응모업체(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2.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제4조 (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주관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응모업체(자)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 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5조 (공동응모 비율 등) 공동응모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은 당선 후 공동응모자 및 계약 담당부서의 협의에 따라 계약방식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지분비율, 분담내용 등을 결정토록 한다.

제6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 발효하며, 본 업체(자)는 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최종 용역완료 후 종결된다.

[서식 4] 대표건축사 선임계(공동응모일 경우, 동일회사 복수인원 참가시에 한함)

대표건축사 선임계

본인은 {○○○ 건축사사무소의 대표(공동대표) 또는 건축사로서}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사업』 기본설계 제한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 건축사사무소 대표 또는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2023. . .

○○ 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 ○○○

부산광역시장 귀하

※ 하나의 설계사무소에 대표 건축사가 2인 이상 있거나 두 업체 이상의 설계사무소가 합동으로 작품을 제출 시 1인 및 1개사를 대표자로 선임해야 함.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서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참여내용 (구체적 설명)

위 사람은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백스코 제3전시장 건립사업』 기본 설계 제한공모에 외부전문가로서 참여하여 신고합니다.

2023. . .

응모대표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부산광역시시장 귀하

보안각서

본인은 부산광역시의 『백스코 제3전시장 건립사업』 기본설계 제한공모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설계공모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공모지침서 및 관련서류 (도면포함)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설계공모 수행 전에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부산광역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참여자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등록업체 자격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3. . .

참여자(외부 전문가 포함)명단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 보안각서는 해당 본인이 반드시 읽은 후 소속, 직위, 성명을 자필로 날인
 ※ 만약 보안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허위 기재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부산광역시장 귀하

청 령 서 약 서

□ 공모명 : 『백스코 제3전시장 건립사업』 기본설계 제한공모

본 사무소(법인)는 부산광역시가 추진하는 『백스코 제3전시장 건립』 기본설계 제한공모에 응모하여 설계지침서 등에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한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공모 과정,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3. . .

건축사무소명 :

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